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47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9년 월 일 (제 회) |

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이상식 의원 등 10인 |
| 발의연월일 | 2019년 2월 일 |

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(이상식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47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9년 2월 일

발 의 자 : 이상식·최경천·박형용·육미선
송미애·김기창·서동학·박상돈
심기보·이상욱 의원(10인)

1. 제안 이유

-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.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, 독립운동의 역사·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(안 제5조)
-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사업의 위탁(안 제6조)
-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관련부서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 : 2019.2.12. ~ 2019.2.21.(1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.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,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독립운동”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.
2. “독립운동가”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념사업)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

2. 독립운동의 추모사업
3.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관련 사업
4.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
5.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6.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6조(사업의 위탁) ① 도지사는 3.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국가보훈법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8.4]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2>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공훈선양시설” 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-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·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3.5.22>

- 제26조(공훈선양시설의 설치·관리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·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·조형물·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·전시관·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·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·전시관·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·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·전시관·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3.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,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·발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독립운동 재현사업, 추모사업, 역사적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사업, 학술행사,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 등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5조
 -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
 - 독립운동의 추모사업
 -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립·조사·연구 관련 사업
 -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
 -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 -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독립운동 재현사업, 추모사업, 역사적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사업, 학술행사,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 등

나. 추계의 전제

- 2019년 당초예산을 기준, 사업의 추계 및 물가상승률(5%) 고려하여 산출

다. 추계 결과 : 1,730,771천원

라. 재원조달방안 : 1,730,771천원(도비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계 | 1차년도 (2019년) | 2차년도 (2020년) | 3차년도 (2021년) | 4차년도 (2022년) | 5차년도 (2023년)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독립운동 기념사업 | 1,730,771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19년) | 2차년도 (2020년) | 3차년도 (2021년) | 4차년도 (2022년) | 5차년도 (2023년) | 계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 |
| 국 비 | - | - | - | - | - | - | |
| 도 비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 |
| 시군비 | - | - | - | - | - | - | |
| 세 출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 |
| 독립운동 재현사업 | - | 15,000 | 15,075 | 15,150 | 15,226 | 60,451 | |
| 독립운동 추모사업 | 24,140 | 24,261 | 24,382 | 24,504 | 24,627 | 121,914 | |
| 독립운동 연구사업 | - | 20,000 | 20,100 | 20,201 | 20,302 | 80,603 | |
| 독립운동 학술행사 | 70,000 | 70,350 | 70,702 | 71,056 | 71,411 | 353,519 | |
| 교육·홍보· 학예 | 121,040 | 121,645 | 122,253 | 122,864 | 123,478 | 611,280 | |
| 기 타 | 99,600 | 100,098 | 100,598 | 101,101 | 101,607 | 503,004 | |
| 재원 조달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 |
| 의 존 재 원 | 소 계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
| | 보조금 | 314,780 | 351,354 | 353,110 | 354,876 | 356,651 | 1,730,771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
□ 2019년 비용추계 세부내용

1. 독립운동 추모사업 : 24,140천원(임정 기념식 13,000, 경술국치 등 11,140)
2. 독립운동 학술행사 : 70,000천원(충북연구원 40,000, 단재기념사업회 30,000)
3. 교육·홍보·학예 : 121,040천원(충북예총 50,000, 충북민예총 50,000, 독립운동 사진전 20,000, 초중고 사적지 순례 1,040)
4. 기타 : 99,600천원(광복회원 위문품 55,500, 삼일절·광복절 행사 40,000, 애국지사 위문 등 4,100)